메가랜드**///** 종로캠퍼스 (2021년)

제32회

기본과정 (5주차)

상담 🏗 02) 2135-1806

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



- 01.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이 예치된 경우,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 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 "하여야" 한다. (제23회 변형) (0, X)
- 02.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공탁금을 예치 받는 "법원"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. (제24회) (0, X)
- 03.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,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"분리"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위반시에는 "업무정지"처분의 대상이 된다. (제 23회) (0, X)
- 04.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, 이 법령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 (제20회) (0, X)
- 05. "개업공인중개사"가 체결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'전부'가 무효이다. (제22회)(제28회) (0, X)
- 06.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, 부도 처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초과중개보수로 처벌된다. (제19회) (0, X)
- 07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'상가분양대행'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은 경우에 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. (제23회) (0, X)
- 08.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되며,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. (제22회 변형) (0, X)
- 09.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. (제28회 변형) (0, X)
- 10.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 지행위에 해당되며,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. (제23회 변형) (0, X)
- 11.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'대리인'과 중개대상물을 '직접'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. (제27회 변형) (O, X)

- 12.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'다른'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(제19회) (0, X)
- 13.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, 일방을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지행위로 처벌된다. (제23회 변형) (0, X)
- 14.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,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, 그 중개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. (제28회) (0, X)
- 15.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. (0, X)
- 16.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. (제22회)(제26회)(제27회)(제28회) (0, X)
- 17,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'전'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 (제22회)(제27회)(제28회) (0, X)
- 18.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 (제21회 변형) (0, X)
- 19.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'5년'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. (제27회) (0, X)
- 20.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 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. (제25회) (0, X)
- 21.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'30일'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. (제21회)(제28회) (0, X)
- 22.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. (제26회)(제28회) (0, X)
- 23.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인정된다. (제19회) (0, X)
- 24.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,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. (제26회) (0, X)

- 25.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. (제19회)(제21회)(제28회) (0, X)
- 26. 주택의 "임대차"를 중개하는 경우,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. (제28회) (0, X)
- 27. 주택 "외"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(제28회)(0, X)
- 28.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. (제19회)(제28회)(0, X)
- 29. 중개대상물(주택)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(주택)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. (제20회)(제26회)(제28회)(0, X)
- 30. 중개대상물인 (주상복합용도)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. (제20회)(제28회) (0, X)
- 31. '등록관청'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·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. (제23회 변형) (0, X)
- 32.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서 '등록관청'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. (제21회 변형) (0, X)
- 33.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·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가 전국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·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·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(제21회)(제31회 변형) (0, X)
- 34.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. (제24회) (0, X)
- 35.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·운영하지 않은 경우,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(제23회) (0, X)
- 36.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(제21회) (0, X)

♥수고하셨습니다^^

```
♥ 2021년 필승합격입니다!!!~~~^^*♥
01-X (권고'할 수' 있다) //
02-X (예치명의자 : 〈중.은.체.보.신.전.공〉 (개업공인중개사, 은행, 체신관서, 보험회사, 신탁업자, 전문
     회사, 공제사업자) (법원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) //
03-0 //
04-0 //
05-X (법정한도를 초과하는 "초과분"이 무효이다) //
06-0 //
07-X (분양대행료와 같은 "겸업보수"는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) //
08-0 //
09-0 (무등록중개업와 협력행위는 처벌된다) //
10-0 //
11-0 //
12-0 //
13-X ("일방"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) //
14-X (전매차익이 없어도 투기조장에 해당되어 금지행위로 처벌된다) //
15-0 (거래질서교란행위로서 3년-3천 이하) //
16-0 (법 제30조 제2항) //
17-0 (법 제30조 제3항) //
18-X (법인인 아닌 "개인"사업자는 "1억원"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) //
19-X ("3년"이내 회수할 수 없다) //
20-X ("만료일"까지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) //
21-X ("15일" 이내에 보전해야 한다) //
22-0 //
23-X (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'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이 소멸된다) //
24-0 (무등록중개업자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) //
25-X (거래금액이 "큰" 것을 기준) //
26-0 //
27-X (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) //
28-0 //
29-X (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'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한다) //
30-0 //
31-X (등록관청이 아니라, "국토교통부장관"이 지정권자이다) //
32-X (등록관청이 아니라, "국토교통부장관") //
33-X (전국 500명 이상, 2개 이상의 시`도에서 각각 "30명" 이상) //
34-X ("30일"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) //
35-0 //
36-X (지정취소사유이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) //
```

♥ 각종 자료: 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

♥ 기본서 핵심내용과 핵심지문(메타인지확인지문)해설 : (유투브) 김상진의 공인티비♥